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규제완화정책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임의의 조항을 삭제하여 분뇨수집·운반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「하수도법」에서 정한 “분뇨수집・운반업자의 준수사항”과 일치하도록 해당 조항 개정 (안 제26조)

: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하고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.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하수도법」 및 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다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〔2017. 10. 16. ~ 11. 6〕
라. 성별영향평가분석 : 해당사항 없음
마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상위법령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운반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

○ 주요 개정내용으로는

- 대행업자의 청소일지 작성 비치 및 실적 보고사항을 삭제하고 분뇨수집·운반업자의 청소일지 작성 및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 「하수도법」등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분뇨수집·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